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81
----------	-------

발의연월일 : 2026. 3. 23.

발 의 자 : 윤준병 · 임미애 · 송옥주
임호선 · 박수현 · 김 윤
권칠승 · 최혁진 · 전용기
이정문 · 이춘석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 정세의 불안정으로 인해 국제 유가가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일부 주유소 등 석유판매업자들이 국제 유가 상승 폭보다 훨씬 가파르게 국내 판매 가격을 올리는 이른바 ‘바가지 가격’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또한, 정유사로 대표되는 석유정제업자 등이 석유판매업자들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판매함에 있어 공급 당시 통보 가격을 결정·통지하고서 뒤늦게 당초 통보금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는 관행도 존재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 관련, 현행법상 석유 가격은 시장 자율에 맡겨져 있으나, 수급 불균형이나 외부 요인을 악용하여 비정상적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 또는 공급 당시 통보 또는 계약한 석유제품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

로 정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제지할 구체적인 금지 규정과 처벌 조항이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해 대다수 선량한 판매업자들까지 오해를 받거나,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이 왜곡되어 전국적인 수급 안정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이에 석유정제업자 등의 공급가액 확정 및 정산 의무를 명문화하여 유통 단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당한 가격 인상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며 위반 시 내역 공표 및 처벌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5 및 제39조제1항제10호 신설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5(석유제품의 공급가격 결정 및 정산 등) ①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석유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시점에 통보 또는 계약한 공급가액(이하 “당초 통보가액”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공급 이후에 시장 상황 등을 이유로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소급하여 정산하거나 석유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석유제품의 공급계약서에는 가격 결정 방식, 정산 시기 및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항제10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 상승, 수급 상황 등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하는 행위

11. 제38조의5를 위반하여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거나 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행위
제39조의2제4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한 행위

마. 제3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거나 석유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한 행위

제45조제10호 중 “또는 같은 조 제2항에”를 “, 제10호 및 제11호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6조제10호 중 “제10호에”를 “제12호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영업시설의 종류 및 설치·개조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 9. (생략)

<신설>

<신설>

10. (생략)

② ~ ⑤ (생략)

제39조의2(공표)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1. ~ 9. (현행과 같음)

10. 공급받은 가격의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 상승, 수급 상황 등 대내외적 여건을 악용하여 부당하게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하는 행위

11. 제38조의5를 위반하여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거나 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하는 행위

12. (현행 제10호와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공표)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국제석유거래업자·석유판매업자·석유비축대행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 가. ~ 다. (생략)

<신설>

<신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 1. ~ 3. (현행과 같음)
- 4.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라. 제39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석유제품 또는 석유대체연료의 가격을 인상하여 공급·판매한 행위
- 마. 제39조제1항제11호를 위반하여 당초 통보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정산하거나 판매업자에게 불리하게 가격을 수정하여 적용한 행위

제45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39조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신설>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9. (생략)

10. 제3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또는 제10호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11. (생략)

-----.

1. ~ 9. (현행과 같음)

10. -----, 제10호 및 제11호에-----
--

11. 제39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자

제46조(벌칙) -----

-----.

1. ~ 9. (현행과 같음)

10. -----제12호에-----
--

11. (현행과 같음)